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춘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695

발의연월일: 2020. 12. 18.

발 의 자:최춘식・김용판・이명수

지성호 · 김성원 · 이주환

하영제 · 정찬민 · 김희곤

이 영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소방공무원에 의한 소방특별조사는 일정 사유에 해당하여 점검이 필요한 경우 소방청장 등의 조사 대상 선정 과정을 통해 실시 하도록 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장애인·노인·임산부·영유아 및 어린이 등 이동이 어려운 사람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은 화재 발생 시 인명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관련 사안을 소방특별조사 실시 사유로 명시하여 장애인 등 재해약자가 주로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소방점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어 왔음.

한편, 현행법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그 대상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 등을 정기적으로 자체점검하거나 관리업자 또는 기술 자격자로 하여금 점검하게 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 의한 점검은 객관성을 확보하기

어렵고 부실점검의 소지가 있어 자체점검이라 하더라도 소방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관리업자 또는 기술자격자에 의해서만 점검이 이루 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이에 장애인·노인·임산부·영유아 및 어린이 등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로서 화재 등이 발생할 경우 인명피해의 우려가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소방특별조사의 실시 사유의 하나로 명시하고, 소유자 등 관계인의 점검을 관리업자 또는 기술자격자만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점검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제5호의2, 제25조 및 제49조).

법률 제 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제5호까지"를 "제5호까지 및 제5호의2"로 한다.

5의2. 장애인·노인·임산부·영유아 및 어린이 등 이동이 어려운 사람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로서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인명피해의 우려가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25조의 제목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등)"을 "(소방시설등의 점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자체점검을 하거나 관리업자"를 "관리업자"로, 같은 조 제2항 중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을 "관리업자"로 한다.

제49조제4호 중 "대한 자체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를 "대하여"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소방특별조사) ① (생 략)	제4조(소방특별조사) ① (현행과			
	같음)			
② 소방특별조사는 다음 각 호	②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 실시한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u><신 설></u>	5의2. 장애인·노인·임산부·영유			
	아 및 어린이 등 이동이 어려			
	운 사람이 주로 이용하는 시			
	설로서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인명피해의 우려가 높다			
	고 판단되는 경우			
6. 제1호부터 <u>제5호까지</u> 에서 규	6 <u>제5호까지 및 제5호</u>			
정한 경우 외에 화재, 재난·	<u>의2</u>			
재해, 그 밖의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인명 또는 재산				
피해의 우려가 현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 ⑦ (생 략)	③ ~ ⑦ (현행과 같음)			
제25조(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제25조(소방시설등의 점검 등) ①			
<u>등)</u>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				
인은 그 대상물에 설치되어 있				

는	소병	}시설-	등에	대하여	며 정	[기
적의	으로	자체	점검을	하기	식나	관
리 역	<u> </u>	또는	행정역	안전부	l궝으	로
정칭	하는	기술	가격지	나로	하여	금
정기	기적의	으로	점검ㅎ	1세	하여	야
한디	7.					

② 제1항에 따라 <u>특정소방대상</u> 물의 관계인 등이 점검을 한 경우에는 관계인이 그 점검 결 과를 행정안전부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본부장이나 소 방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 ④ (생 략)

- 제4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기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 3. (생 략)
 - 4.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 방시설등에 <u>대한 자체점검을</u> <u>하지 아니하거나</u> 관리업자 등 으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 하게 하지 아니한 자
 - 5. ~ 10. (생략)

<u>관리업자</u>
,
② <u>관리업자</u>
③・④ (현행과 같음)
제49조(벌칙)
1 0 /퀴레기 기 ()
1. ~ 3. (현행과 같음)
4
<u>대하여</u>
5. ~ 10. (현행과 같음)